

제246회 임시회
2006. 1. 23(월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- 2006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**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**개정이유**는
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「주 40시간 근무제」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,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일수 조정, 연가일수의 탄력적운영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**주요 내용**은,
 - 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,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함을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14조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였으며
- 안 제15조의2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를 폐지하고
- 안 제18조제6항에서는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정하였으며
-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의 무급화, 포상휴가·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,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, 배우자 출산, 배우자·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만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는 축소하였으며(별표2참조)
- 부칙 제2항에서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(2005. 3. 18일 제정)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토요일휴무 원칙, 근무 여건에 따른 중식시간 변경가능,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,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.
- 다만, 부칙 2항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 40시간근무의 적용이 주 5일제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되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